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79

발의연월일: 2020. 1. 5.

발 의 자: 金炳旭・권은희・박완수

허은아 · 이종배 · 황보승희

김정재 • 배준영 • 김기현

곽상도・주호영・이 용

이 영・김태호・하태경

이종성 · 최춘식 · 송언석

유의동 · 강민국 · 추경호

정찬민 · 양금희 · 김태흠

정진석 · 류성걸 · 권명호

김은혜 · 김도읍 · 이명수

윤희숙・김 웅・정운천

윤두현 의원(3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9,676여건, 2017년 34,169건, 2 018년 36,417건, 2019년 41,389건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.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함께 법·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현행법은 피해아동, 아동학대범죄신고자, 목격자 등이 아동학대 현 장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함. 또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,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음.

이에 피해 아동, 아동학대범죄신고자,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,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11조 및 제17조의2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피해아 동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, 아동학대범죄신고자,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한다.

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7조의2(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)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·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현장출동) ① ~ ⑤ (생	제11조(현장출동) ① ~ ⑤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
	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
	피해아동전담공무원은 피해아
	동, 아동학대범죄신고자, 목격
	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
	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
	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한
	<u>다.</u>
<u> <신 설></u>	제17조의2(증인에 대한 신변안전
	조치)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
	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
	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·신체
	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
	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
	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
	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
	요청하여야 한다.
	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
	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.
	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
	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